

제276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2. 24.(목) 15:0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쌍림 상생교류센터 신축

- 위치 : 쌍림면 귀원리 206-3번지 외 10필지
- 면적 : 부지면적 3,135㎡(군유지 2,306, 취득면적 829)
연면적 1,820㎡(1층 750, 2층 670, 3층 400)
- 주요시설 : 면사무소, 다목적실, 상생 주민카페, 회의실 등
- 사용용도 : 행정·문화·복지 공간 등 서비스 제공의 장소로 활용
- 예정가격 : 6,700백만원(2021~2024년)

나.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조성용 부지 매입

- 위치 : 내곡리 510번지 외 6필지
- 면적 : 13,296㎡
- 사용용도 : 육묘장, 시험연구포장, 농가실습교육장 등
- 예정가격 : 800백만원

4. 검토의견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건당 취득 및 처분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의 건당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번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2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림 상생교류센터 신축 건은

쌍림면사무소와 문화복지센터를 통합한 복합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8억원과 군비 12억원을 확보하였고, 면사무소 신축에 군비 27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 SOC기능의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조성용 부지 매입 건은

농지 13,296㎡의 실증시험포장 매입으로 육묘장, 시험연구포장, 농가실습교육장 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미래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기술보급의 중추시설로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